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6. 10.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6. 10.
- 다. 상 정 일 자 : 96. 10. (제4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자 : 지적과장 구 평 우

나. 제안사유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토지평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관련조항을 개정코자함.

다. 주요내용

- 위원회의 구성 변경 (안 제2조)

- 현 행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개 정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심의사항 (안 제3조)

- 현 행 :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 및 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사항.
- 개 정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 재 휴)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

4. 질의 답변 요지

"생 략"

5. 토론요지

"생 략"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첨 부 :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출년월일 : 1996. 10. 14

제 출 자 : 화 순 군 수

1. 제안이유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이 개정('95. 12. 29 법률 제5108호) 됨에 따라 관련조항 개정 및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코자 함.

2. 개정근거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 2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3. 주요골자

- 위원회의 명칭 변경 : 지방토지평가위원회 →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
- 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은 부군수로 함
 -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 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함
- 위원회의 기능(심의사항)
 -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토지평가위원회"를 "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중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인이상 15인 이내의"로 하고, 동조 제2항중 "군수"를 "부군수"로 한다.

제2조제4항중 각호를 삭제하고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

제3조제1항중 "시행령 제14조 제1항"을 "법 제12조의2"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제3호를 5호로하고 3, 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 4. 개발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개
행	정
안	안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가공시및토지 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시행령" 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u>지방토지평가위원회</u>(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u>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이하의 위원으로</u> 구성하고, 위원중 3인이상 7인이하의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은 <u>군수</u>가 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p> <p>③ (생략)</p> <p>④위원회의 위원은 <u>위원장이 지명한 소속공무원중 5급이상의 공무원 5인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u></p> <p>1. <u>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등에 관한 이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u></p>	<p>제1조 (목적) - - - - -</p> <p>- - - - -</p> <p>- - - - -</p> <p>- - - <u>화순군토지평가위원회</u> - - - - -</p> <p>- - - - -</p> <p>- - - - -</p> <p>제2조 (위원회 구성) ① - <u>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u> 내의 - - - - -</p> <p>- - - - -</p> <p>② - - - - - <u>부군수</u> - - - - -</p> <p>- - - - -</p> <p>- - -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 - <u>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자중에서 군수 - - - 자</u>로 한다.</p> <p>1. (삭제)</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2. <u>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u>	2. <u>(삭제)</u>
3. <u>지가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u>	3. <u>(삭제)</u>
4. <u>지역사정에 정통한 자.</u>	4. <u>(삭제)</u>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3조 (심의사항) ①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u>시행령 제14조 제1항에서</u> 규정한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u>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u>	1. <u>(삭제)</u>
2. <u>공시지가의 적용 방법에 관한 사항</u>	2. <u>(삭제)</u>
(신설)	3. <u>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u>
(신설)	4. <u>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u>
3. <u>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u>	5. - - - - -